
「과학기술혁신펀드」 2026년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FAQ

2026. 6. 17.

신한자산운용

목 차

1. 정부재원 활용 펀드와 공동 출자 가능한지?	1
2. 주목적 투자 대상을 추가하여 제안 가능한지?	1
3. LOC를 심사에서 인정받으려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?	1
4. LOC의 제출은 반드시 공고된 양식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?	1
5. 개인의 LOC도 심사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?	2
6. 출자기관으로부터 LI를 받았을 경우 제출 가능한지?	2
7. 대표펀드매니저의 겸임 관련 요건은?	2
8. 주목적 투자비율 상향 우대 조건은?	2
9. 대편/핵운 외 참여인력 실적을 입력할 수 있는지?	3
10. 주목적 투자는 신주 투자의 경우에만 인정되는지?	3
11. 경력확인은 어떤 절차를 따르는지?	3
12. 공고문 상 약정총액의 의미는?	3
13. 관리보수율을 구간별로 차등할 수 있는지?	4
14. 펀드명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?	4
15. 제안펀드 결성 전, 기 결성된 타펀드와 병행이 가능한지?	4
16. 투자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의 대상은?	4
17. 비시장성 미회수투자자산은 기재를 방법은?	5
18. 출자자 관련 제한이 있는지?	5
19. 대출 방식으로 펀드 운용이 가능한지?	6
20. 동일기업에 대한 중복투자를 허용하는지?	6
21. Co-GP 펀드의 핵심운용인력 변경 이력 기재 요령은?	6
22. SPC를 통한 투자시 투자/회수금액 기재 방법은?	6

23. 펀드 존속기간은 반드시 10년이 되어야 하는지?	6
24. 주목적 투자대상에서 중소·중견기업의 정의는?	7
25. 국외창업기업의 주목적 투자 인정 가능한지?	7
26. 주목적 투자비율 계산방법은?	7
27. 참여인력 재직 기준은?	8
28. 일반법인 투자경력 인정 가능 여부는?	8
29. Co-GP 신청 요건은?	8
30. 『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』 이란?	8

Q1. 정부재원 활용 펀드(모태펀드 등)와 과학기술혁신펀드가 공동출자 가능한지?

- ☐ 공동출자 가능하나, 주목적 투자분야가 상이한 경우 사전 협의 요망

Q2. 주목적 투자 대상을 추가하여 제안 가능한지?

- ☐ 사전 협의시 제한적으로 가능함
 - 과학기술혁신펀드의 조성 취지 및 목적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주목적 투자 대상 추가 가능하며, 주목적 투자대상이 양립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
 - ※ 단, 타 출자자가 부과하는 주목적 투자분야가 과학기술혁신펀드 가점·우대사항에 해당할 경우 과학기술혁신펀드의 가점·우대사항 적용 불가

Q3. 출자확약서(LOC)를 심사에서 인정받으려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?

- ☐ 제안서 접수일까지 제출
 - 단, 접수일 이후 LOC를 발급 받는 경우 구술심사 자료에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나 참고목적으로만 활용

Q4. 출자확약서(LOC)의 제출은 반드시 공고된 양식을 따라야 하는 것인지?

- ☐ 원칙적으로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되 각 출자기관 고유의 양식이 있는 경우 해당 양식을 사용할 수 있음
 - 다만, 본건 출자사업 목적상 LOC 기재내용(기간, 투자대상, 투자조건, 유효기간 등) 등이 적합한지 사전 협의 필요
 - 특히, 출자확약서(LOC) 유효기간이 본건 출자사업 펀드 결성시까지 유효해야함

Q5. 개인의 출자확약서(LOC)도 심사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?

- ☐ 개인의 LOC는 운용사 소속인력에 한하여 인정

Q6. 출자기관으로부터 LOI(출자의향서) 받았을 경우 제출 가능한지?

- ☐ 제출 불요하며, 제출하더라도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

Q7. 대표펀드매니저의 겸임 관련 요건은?

- ☐ 현재 타 펀드 대표펀드매니저로서 참여중이더라도 신청 가능하나
공고문상 핵심운용인력의 참여펀드 제한 요건*을 만족하여야 함

* 핵심운용인력(대표펀드매니저 포함)이 투자기간 중 본건 펀드를 포함하여 핵심
운용인력으로 참여할 수 있는 펀드의 개수는 4개를 초과할 수 없음

Q8. 주목적 투자비율 상향 우대 조건은?

- ☐ 목표결성액과 초과결성액 모두 10%p 이상 상향 필요
- 예시) 인공지능 분야 지원 시 목표결성액의 50% 이상, 초과결성액의
30% 이상 신청하였을 경우에만 우대 가능
- ※ 단, 공통분야(NEXT국가전략기술 및 우수기술평가기업)는 우대
대상에 해당되지 않음

Q9. 대표펀드매니저/핵심운용인력 외 참여인력 실적(엑셀양식 3.2)을 입력할 수 있는지?

- ☐ 대표펀드매니저, 핵심운용인력은 필수 입력. 그 외 참여인력은 엑셀 양식 '작성요령' 시트에서 필수 작성대상이 아니나 입력을 권장함
- 단, 본 펀드와 관련된 모든 인력(일반운용인력, 리스크, 컴플라이언스, 관리인력 등 포함)에 대하여 엑셀양식 3.1, 3.4 시트 작성 필수

Q10. 주목적 투자는 신주 투자의 경우에만 인정되는지?

- ☐ 신주 투자에 한하여 주목적 투자를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나, 경영참여형 PEF에 한하여 M&A투자에 대한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음. 상세 내용은 규약/정관 협의 시 반영

Q11. 경력확인은 어떤 절차를 따르는지? 양식에 전 직장 대표이사 날인 등이 반드시 필요한지?

- ☐ 투자관련 경력의 경우, 공고된 서식에 따라서 경력증빙 제출 필요
- 대표이사 날인이 원칙이나, 부득이한 경우 인사담당부서장 등의 날인으로 갈음 가능(심사과정에서 해당 기관에 확인 가능해야 함)

- ☐ 투자 외 경력의 경우,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*를 제출

* 참여운용인력 경력사항 제출시 재직일자 등은 국민연금가입자증명서를 기준으로 작성

Q12. 공고문 상 약정(결성)총액의 의미는?

- ☐ 펀드의 최종 약정(결성)총액(증액하는 경우, 증액금액 반영)을 의미

Q13. 관리보수 제안 시 관리보수율을 구간별로 차등할 수 있는지?

☞ 최종 펀드 결성 규모에 구간별 관리보수율을 적용하여 합산

☐ 공고의 관리보수율 이내에서 차등하여 계단식으로 설정 가능

- 예시) 700억원 규모 펀드 결성 시 300억원 이내 2.2%,
300억원~600억원 2.0%, 600억원~700억원 1.8%로 제안 가능

<결성규모별 관리보수 지급비율>

구분	≤300억원	≤600억원	≤1,200억원	>1,200억원
결성일~3년 (약정총액 기준)	2.2% 이내	2.0% 이내	1.8% 이내	1.5% 이내
3년~만기 (투자잔액 기준)				

Q14. 펀드명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?

☐ 펀드명에 '과학기술혁신'이 포함되어야 하나, 과학기술혁신펀드
출자금액보다 출자금이 큰 출자자가 반대하는 경우 사전 협의 요망

Q15. 제안펀드 결성 전, 기 결성된 타펀드와 병행이 가능한지?

☐ 불가능함

Q16. 투자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의 대상은?

☐ 대상 : 지분법 대상이 되는 과학기술혁신펀드 자펀드 전체

Q17. 비상장성 미회수투자자산은 어떤 금액으로 기재를 해야 하는지?

- ☐ 최근년도 기준 감사보고서(또는 제안서 작성기준일의 가결산보고서) 장부가액으로 기재

* 최근년도 감사보고서(또는 가결산보고서)에 반영되지 않은 공정가치 금액은 미인정

- ☐ 각 펀드 감사보고서 내 사용하는 가치평가방법에 따른 가치 반영

비상장기업 (가)기업을 2개의 펀드(A펀드, B펀드)에서 투자 후 A펀드는 원가법으로, B펀드는 공정가치 평가값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는 경우

- A펀드 : 취득원가 10억원, B펀드 : 공정가치 15억원

⇒ A펀드 10억원, B펀드 15억원으로 기재

Q18. 출자자 관련 제한이 있는지?

- ☐ 본 사업은 10년 이내의 장기펀드에 출자하는 사업으로 출자목적 이해도, 장기적인 출자능력 등을 보유한 자가 출자 가능함

- 국내 기관투자자, 법인이 원칙이며, 개인출자자(운용인력, 특수관계인 등), 타 집합투자기구(사모투자신탁 등), 해외출자자 등은 신한자산운용과 사전협의를 통해 가능

- 해외출자자는 아래 서류 구비 필요 (원본 또는 원본대조필)

- 출자자의 사업자 등록증(이에 해당하는 국가의 서류)
- 출자자의 인감증명서(이에 해당하는 국가의 서류)
- 이사회 등 LOC 발급에 따른 의사결정기구의 의사록
(단순 출자여부 뿐만 아니라, 주목적 투자를 비롯한 주요 펀드결성조건, 국내법에 근거한 펀드 출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)
- 대표이사 여권사본(기타 신원 증빙이 가능한 서류)
- 최근년도 연차보고서 등 출자자(회사)개요 자료, 최근 3개년 외부감사받은 감사보고서
- 기타 출자자 및 출자여부에 대해 증빙할 수 있는 자료
- 상기 자료들은 국문으로 번역 및 공증 필요하며, 추가 확인자료 요청 가능

- 지방자치단체 출자시 LOC발급에 따른 의사결정기구의 의사록 제출 필요

Q19. 대출 방식으로 펀드 운용이 가능한지?

- ☐ 투자기구의 유형과 관계없이 대출 방식 펀드 운용은 허용하지 않음

Q20. 동일기업에 대한 중복투자를 허용하는지?

- ☐ 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수요에 따라 투자 가능하나, 기업별 투자 한도는 약정총액의 20% 이하로 제한됨

Q21. Co-GP 펀드의 핵심운용인력 변경 이력 기재 요령은?

- ☐ 공동 운용사 전체 기준으로 핵심운용인력 변경 이력을 기재하여야 하며, 현장실사 시 검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(엑셀양식 4.2)

Q22. SPC를 통한 투자시 투자/회수금액 기재 방법은?

- ☐ SPC 기준이 아닌, 투자기업 기준으로 작성하고, 기타사항 셀에 투자목적 회사를 통한 투자임을 기재 (엑셀양식 2.6, 3.2)
- 아울러, 하나의 SPC에 복수의 펀드 등이 출자하고, 투자대상 기업에 투자한 경우, 전체 금액이 아닌 제안사 작성 대상 펀드 (운용인력) 기준으로 기재

Q23. 펀드 존속기간은 반드시 10년이 되어야 하는지

- ☐ 펀드 존속기간은 운용전략에 따라 10년 이내(10년, 9년 등)로 설정 가능함

Q24. 주목적 투자대상에서 중소·중견기업의 정의는?

- ☐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의거하여 기업의 규모 및 독립성 기준에 따라 규정되는 중소기업
 - ☐ 중견기업 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, 상기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고,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야 함
- * 펀드의 투자를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분리되는 중소·중견기업은 투자대상에 포함함

Q25. 국외창업기업의 주목적 투자 인정 가능한지?

- ☐ 「중소기업 창업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국외창업기업의 경우 주목적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

Q26. 주목적 투자비율 계산방법?

※ 주목적 투자 비율 완화 예시

- AI(인공지능) 분야 지원 운용사가 1,000억원을 결성하였을 경우, 의무투자액은 200억원

구분	총결성액	목표결성액	
		목표결성액	초과결성액
결성액	1,000억원	800억원	200억원
주목적 투자비율	36%	40%	20%
의무 투자액	360억원	320억원	40억원

* (목표결성액) 공고문상 분야별 최소 결성금액.

* (초과결성액) 최종 약정금액 중 목표결성액 초과분

※ 목표결성액은 신청사가 본 펀드 제안서에 기재하는 최소결성액이 아닌, 공고문상 분야별 최소 결성금액을 의미함

Q27. 제안서 작성기준일에 재직하지 않았던 인력도 참여인력으로 지원 가능한지?

- ☐ 제안서 접수일(2026.6.26.) 현재 재직중이라면 지원 가능하며, 투자 현황 및 경력기간 등은 제안서 작성기준일(2026.03.31.)로 작성해야 하고, 작성기준일에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함

Q28. 투자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에서 투자업무를 했던 경력이 핵심 운용인력 경력 요건에서 투자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?

- ☐ 인정받을 수 없음. 다만 투자회사가 아닌 일반법인에서 본 펀드와 관련된 투자업무를 했다면 산업경력으로는 인정 가능

Q29. Co-GP로 신청할 경우 두 운용사 모두 각 분야별 신청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는지?

- ☐ 두 운용사 모두 지원 요건을 만족하여야 함

Q30. 『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』 은 무엇이며, 해당 기업 확인방법은?

- ☐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요 성과를 알리기 위한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 중이며, 매년 100선의 우수성과를 선정하여 한국과학기술평가원(KISTEP) 홈페이지에 게시